

2006. 1. 27(금)  
제120회임시회제4차본회의

# 제천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설치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산 업 건 설 위 원 회

# 제천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설치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 1. 심 사 경 과

- 가. 제출일자및제출자 : 2006. 1. 17. 제천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06. 1. 19.  
다. 상 정 일 자 : 2006. 1. 24(제120회임시회산업건설위원회제1차회의)

## 2. 제안설명 (제안설명자 : 환경관리사업소장 김기덕)

### 가. 제안이유

행정자치부 상·하수도사업 지방직영기업 전환추진 지침에 의거 2005년 지방  
직영기업 전환대상인 제천시 하수도 사업을 지방공기업법과 동법시행령에 근거하여  
지방공기업으로 전환코자 함.

### 나. 주요내용

- 하수도사업의 범위규정(제2조)
- 관리자의 지정 : 관리자는 하수도 업무담당국장(제4조)
- 특별회계의 설치 : 지방공기업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제8조)
- 경비에 대한 독립재산의 원칙 및 예외규정(제10조)
- 일반회계 부담규정(제11조)
- 출자에 대한 규정(제12조)
- 지방채 발행규정(제14조)
- 잉여금의 처분규정(제16조)
- 계리상황의 보고(제19조)

###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최동수)

#### < 法的檢討 >

- 지방자치법 제137조에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증진과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지방공기업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고, 지방공기업법 및 동법시행령 등에서 1일 처리능력 1만5천톤이상인 하수도 사업에 대해서는 이를 지방공기업으로 설치 또는 설립 경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행정자치부 2005년 상·하수도사업 지방직영기업 전환 추진지침에 제천시 하수도 사업이 2005년 지방공기업 전환대상으로 계획되었음.
- 행정절차법 제41조와 제42조 등에 의거 2005년 11월 28일 입법예고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의 19규정에 의거, 제천시 조례 규칙심의회 의결을 거치는 등 제반 법적 절차를 준수하였음.

#### < 行政的檢討 >

- 일정규모 이상의 처리시설을 갖추고 있는 지방하수도 사업을 지방직영공기업으로 전환하는 것은 관련법규나 행자부의 업무처리지침 등에 명시되어 있어, 시행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생각되나
- 공기업으로 전환해야 하는 필요성과 효율성에 대해서는 꼼꼼이 살펴보아야 함.
- 공기업 전환의 필요성은 재산관리에 있어 독립채산제가 가장 본질적인 요소인바, 경영에 필요한 경비는 타회계부담금, 원인자 부담금을 제외하고는 자체 충당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제천시 하수도사업 재무 현실에 대한 현황분석과 앞으로 공기업화 했을때의 회계간 재무균형 정도 등에 대해서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 또한 공기업화 했을 때의 경영방법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즉,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 등에 대해서도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며,

- 특히, 하수도사용료의 현실화율에 대한 분석과 앞으로의 조정계획 등에 대해서도 꼼꼼이 살펴보아야 함.
- 공기업화 했을 때의 조직관리에 대한 설명과 관리자의 지정(조례 제4조 : 관리자는 하수도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한다)이유 등에 대해서도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 제11조(일반회계부담)제3호 빗물 처리시설의 설치 및 유지에 소요되는 경비를 일반회계에 부담시키는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 제12조(출자)제1항 제1호 창업시에 출자할 수 있도록 한바 창업시란 어떤 상황을 의미하는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 하수도사업을 지방공기업으로 전환하는 것은 공공서비스는 그 사용량에 따라 수익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지향하고 있는 바, 공공서비스의 질적 향상은 물론 재무의 안전성 및 개선 등의 효과를 크게 기대할 수 있을 것임. 따라서, 이 분야에 대하여 세심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람.

## 4. 질의 답변 요지

### 가. 질의요지

- 우리시의 1일 처리능력은 어떻게 되는지? (최창규의원)
- 공기업이 됐을 때에 경영방법은? (최창규의원)
- 하수도 사용료를 현실화했을 때 시민의 반발과 타물가의 상승요인 등이 작용하는데 거기에 대한 조정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최창규의원)
- 제천시 하수도 사업경영을 위한 관리자를 담당국장으로 지정한다고 했는데 국장은 별도로 하는 것인지? (박종유의원)
- 공기업으로 전환했을 때 전환해야 하는 필요성과 전환했을 때 우리시에 이익은 무엇인지? (김성진의원)
- 제11조 우리 일반회계 부담 제3호를 보면 빗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유지에 소요되는 경비를 일반회계에서 부담을 시키는 이유는 무엇인지? (김성진의원)

- 제12조 제1항 제1호에 창업시출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창업시는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김성진의원)

나. 답변요지

< 환경관리사업소장 김기덕 >

- 우리시에 하수처리능력은 1일 7만톤, 인구 대비 16만명까지 가능함.
- 지금 현재에 기타 특별회계로 운영이 되고 있고 이 조례가 시행이 되게 되면 지방직영공기업으로 되게 되는데 회계처리는 현재는 단식부기로 되어 있으나 지방직영공기업이 되면 복식부기로 예산편성은 세입세출로 단순하게 되어 있던 것을 지방직영공기업이 되면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의 수익적 수입, 수익적 지출, 자본적 수입, 자본적 지출 이와 같이 각 항별로 달라지게 되며 예산에 증감이라든지 이런 내용은 포함이 되지 않고 다만 회계처리상에 회계장부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현재는 징수부, 지출원인행위부, 지출부, 현금출납부로 단순화되어 있던 것을 수입예산 정리부, 지출예산 통계원장 등 각 세목별로 각 성격별로 원장과 장부를 기록하는 등 회계투명성이 확보됨. 회계관직도 징수관, 경리관, 지출원으로 일반적인 걸로 되어 것이 관리자가 건설국장이 되는 등 변화가 있을 것임. 또 법령도 현재는 지방재정법이나 재무회계 규칙을 따르게 되어 있으나 지방공기업법, 지방공기업 재무회계규칙으로 지방재정공기업이 변경됨.  
이렇게 바뀔 때 우리시에 현재 기타회계로 운영하는 것과의 일반회계에서 전입되는 금액이 많아지거나 적어지는 일은 없을 것이며 다만 운영관리상에 필요에 의해서 지방직영공기업이 됐을 때 독립채산제로 운영되어 수입과 지출간에 관계가 전입금으로 표시가 되는 것만 달라질 뿐이지 달리 금액의 증감내용은 없음.
-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계획은 지방직영공기업으로 변화와 상관없이 정부의 물가안정대책에 의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현실화율에 저희가 이미 60% 정도 현실화되어 있고 타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중간 정도로 가기 때문에 지방직영공기업이 된다고 해서 더 빨리 현실화 되는 일은 없음.

현실화에 대한 기간은 정해진 기간이 5년인데 우리시는 7년으로 중앙정부와 협의를 마쳤음.

- 담당국장으로 표시된 건 국장이 명칭이 변경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 소속이 관광건설국으로 되어 있어 담당국장님은 관광건설국장이 당연직으로 될 것임.  
지방공기업이 돼도 직원들의 변동은 없음.
- 지방공기업이 됨으로써 경영이 투명해지고 현재는 결산때 자체 결산을 해서 의회에 승인받는 것으로 끝나게 되는데 지방직영공기업이 되면 자체 결산후에 공인회계사에 감사를 거쳐서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게 됨. 한번 더 회계사의 절차를 거침으로서 회계의 투명성이 확보가 되고 또 각종 장부 정리라든지 집행과정에서 복식회계로 정리가 되고 요금산정이나 요금부과 채무등의 부분에 있어서 결산때 정갈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채무에 대한 독려도 강화될 것으로 재정이 건실해질 것으로 판단됨.
- 빗물처리시설은 어떻게 보면 하수처리하고는 직접적으로 관계는 없으며, 다만 저지대에 빗물이 고여있으면 처리대책을 하기 위해서는 빗물처리대책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하수도 사업으로 할 경우에 일반회계에서 부담을 해 주지 않으면 원가에 포함이 되게 되며, 결국 하수도 요금하고 연관이 됨.  
일반회계에서 전입받아서 하는 것과 순수하게 공기업에서 한 것과 구분 그렇게 함으로써 원가상승을 조금이라도 줄이고 합리적으로 하기 위한 방편으로 보시면 됨.
- 공기업은 말 그대로 기업임. 기업이 처음 출범할 때 새로 만들어진 기업이니까 창업으로 해석하시면 됨.

## 5. 소 수 의 견

“ 없 음 ”

## 6. 토 론 요 지

“ 없 음 ”

**7. 심 사 내 용**

“ 없 음 ”

**8. 심 사 결 과**

“ 원 안 가 결 ”

**9. 심사보고 붙임서류**

제천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설치조례안 1부. 끝.